

NEWSLETTER

March 2024

공정거래 그룹
Antitrust & Competition Group

CONTACT



변호사 정환

T: 02.772.4940
E: hwan.jeong@leeko.com

변호사 김지연

T: 02.772.4306
E: jiyeon.kim@leeko.com

변호사 최정운

T: 02.772.4283
E: jeongyun.choi@leeko.com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2024. 3.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① 가맹사업의 의미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제시하며, ③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및 범위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상대방 구속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필수품목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심사지침은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맹사업의 구성요소는 ①**영업표지의 사용**, ②**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준수**, ③**지원·교육·통제**, ④**가맹금 지급**, ⑤**계속적 거래관계**로, 심사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구성요소의 각 의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지침은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공정거래저해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의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가맹점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 시(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강제, 경쟁가맹점사업자 유인행위의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밖에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은 **광고·판촉행사의 동의 또는 약정 체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맹사업자단체 활동 방해 여부는 **점주단체 활동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개별 행위유형별 위법성 판단기준 및 범위반 예시

행위 유형	세부 유형	범위반 예시(발췌)
거래거절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의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원재료 가격인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가맹본부의 방침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경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의 구속 ■ 거래상대방의 구속 ■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제한 ■ 영업지역 준수강제 ■ 그 밖의 영업활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이 정한 제품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할인판매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상품 등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공산품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설비·장비 ■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나 중심상품 품질의 균질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역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입강제 ■ 부당한 강요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경영의 간섭 ■ 판매목표 강제 ■ 불이익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본부가 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당초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일부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모바일 상품권 관련]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되어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모바일 상품권 관련]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기간을 초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중한 위약금 설정·부과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전가 ■ 부당한 영업위약금 부과 ■ 그 밖의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증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손실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증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p>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사업자 유인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가맹본부의 부도임박, 매각 등 근거 없는 사실을 제시하여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p>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행위 등 (법 제12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점 후 2년밖에 지나지 않아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가맹점에 대해 영업양수도 승인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새로운 모델의 인테리어를 도입하면서 점포의 노후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미 이행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따르겠다는 내용의 약속서를 작성토록 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행위
<p>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법 제12조의3)</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 점포의 입지조건상 심야 영업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영업을 하더라도 매출액이 인건비 등 영업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p>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법 제12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지역 설정 및 기재의무 위반 부당한 영업지역 변경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으로부터 반경 1km 내에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점할 수 없음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가맹본부의 직영점을 개설하는 행위
<p>보복조치 (법 제12조의5)</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p>광고·판촉행사 사전 동의의무 위반행위 (법 제12조의6 제1항)</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적인 TV광고 실시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미만인 동의하였음에도 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인 동의하였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비율(예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비율, 물품제공형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실제 상품 판매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부담 비율 등)를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p>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행위 (법 제14조의2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으로 가맹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을 주도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통상의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매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발견한 가맹계약 위반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역시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식분야 가맹사업에서 주로 문제되는 '필수품목' 관련하여 지난 1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 모바일상품권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에 따라 범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은 가맹사업 규제 및 가맹사업법 개정 등 관련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가맹사업 관련 이슈 검토가 필요한 국내·외 고객께 가장 최신의 심층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 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